

제285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94 호
- 제 출 자 : 정혜영 의원 외 13인
- 제 출 일 : 2021. 10. 7.
- 회 부 일 : 2021. 10. 8.

2. 제안이유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안 제2조(정의)
 -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 인터넷게임 중독 : 「청소년보호법」 제27조제1항¹⁾

1)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예방교육, 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

마. 예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 안 제8조(예산의 지원)

-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52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0. 7. ~ 2021. 10. 13.

5. 검토의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현상이 아니라 도박중독과 같이 행위중독에 속하는 질환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에도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게임을 우선시 하고 대인관계와 학업, 직업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과 이용률에 따라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치료 등의 도움 및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과의존 위험군은 유아동 5.0%, 청소년 13.1%, 성인 5.8%로 매년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게임 과의존 요인별 분석결과 금단현상이 31.0%로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성 25.4%, 가상세계 지향성 23.0%, 일상생활장애 22.3%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격형성에 해를 가져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